

의안번호	2212762
의 퇴 인	조인철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2.
추 계 번 호	25B5027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8조의7(이행강제금) 신설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만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(제1항)	재량규정
3	안 제76조(과태료)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제1항) <u><삭제> 6의7.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</u>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8조의7(이행강제금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	안 제76조(과태료)	

2. 상세 사유

□ 침해사고 조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및 과태료 폐지(안 제48조의7 및 안 제76조)

- 현행법¹⁾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,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,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령(이하 “침해사고 조치 시정명령”)할 수 있으며, 침해사고 조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
 - 개정안은 침해사고 조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*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, 침해사고 조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
- *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만분의 3 이내의 범위(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)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1) 제48조의4(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)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,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)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,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제7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6의7.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[표 1] 침해사고 조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

현행	개정안
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만분의 3 이내의 범위(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)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

자료: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개정안에 따라 침해사고 조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행강제금으로 변경할 경우 현 시점에서는 제재 조치 변경에 따른 위반행위의 증감, 위반행위자의 매출액 등을 예측할 수 없으며,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수입의 증가 및 과태료 수입의 감소 등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 - － 참고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침해사고 조치 시정명령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침해사고 조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임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